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		 금융감독원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

책 임 자	금융위 중소기업과장 홍 성 기(02-2100-2990)	담 당 자	성 미 라 사무관 (02-2100-2992) 권 진 응 사무관 (02-2100-2983)
	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 이 상 민(02-3145-7550)		김 대 진 팀장 (02-3145-7440)
	여신전문금융협회 본부장 이 태 운(02-2011-0710)		이 경 원 부장 (02-2011-0742)

**제 목 : 「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」 개정안 금융위 의결
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고
 신규사업자가 우대가맹점으로 선정시 수수료 차액을 환급**

- ◆ '18.8.22일 발표한 「소상공인·자영업자 지원대책」과 '18.11.26일 발표한 「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」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,
- ① 「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」 개정을 통해 우대수수료를 규정
 ⇒ 5~10억원 : **1.4%**, 10~30억원 : **1.6%**
 - ② PG(전자결제대행업자) 하위 **온라인사업자**에 대한 우대수수료를 적용
 ⇒ 온라인사업자 **57.5만명** (*국세청을 통해 매출액이 확인되는 사업자 대상)
 - ③ 교통정산사업자 하위 **개인택시사업자**에게 우대수수료를 적용
 ⇒ 개인택시사업자 **16만명** (*국세청을 통해 매출액이 확인되는 사업자 대상)
 - ④ '19.1.1일부터 **신규가맹점**이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,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하여 일반수수료를 적용하던 카드매출액에 대해 우대수수료를 소급 적용하여 **45일 이내 수수료 차액 환급**
- * '19년 하반기 전체가맹점 중 약 8%가 '19년 상반기 진입한 신규가맹점 일 것으로 예상되며, 이중 약 98%가 우대가맹점으로 환급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

1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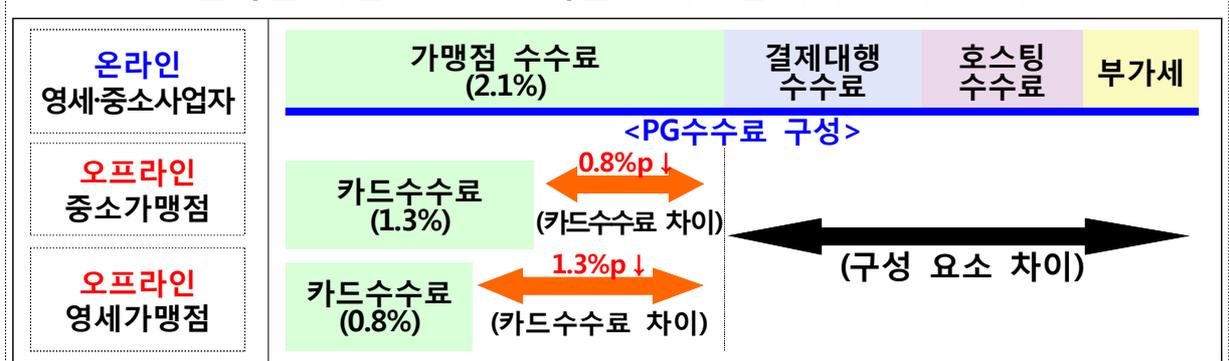
- '19.1.30일 개최된 제2회 금융위에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규정, 온라인사업자·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율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「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」 개정안 의결
- '18.8.22일 발표한 「소상공인·자영업자 대책」^①과 '18.11.26일 발표한 「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」^②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와 함께
 - * ① 영세·중소 온라인사업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우대수수료 적용
 - ② 추가된 우대구간(연매출 5~10억원, 10~30억원)에 대해 각각 1.4%, 1.6%의 우대수수료 적용
-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가맹점이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(업종평균 수수료율-우대수수료율)* 환급
 - * 신규가맹점의 경우 매출액 파악이 불가능하여 우대가맹점 선정 前까지 업종 평균 수수료율 적용

2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

1. 온라인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

- (현황) 온라인사업자는 특성상 직접 가맹점이 되기 어려워 대표가맹점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(PG : payment gateway)를 통해 카드 결제
 - ⇒ 이 경우 대표가맹점*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카드수수료가 산정되어 온라인사업자들이 영세한 경우에도 우대수수료 적용이 불가
 - * 매출액은 PG수수료 수익 등이 합산·집계되어 대부분은 일반가맹점('17년 기준 일반가맹점 평균 수수료율 약 2.1%)으로 분류됨

【참고】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가맹점간 수수료 부담 비교



□ (개선방안) 거래안전성 등을 위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등록 PG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의 경우 개별 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대수수료를 적용

○ PG는 카드수수료 인하분 만큼 온라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PG 수수료를 인하

□ (기대효과) PG결제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

○ 특히, 금번 확대된 우대가맹점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온라인 사업자 57.5만명에게 우대수수료를 적용

<PG 하위 온라인사업자의 카드수수료 개선안 (예시)>

구분	PG 하위사업자 (만개)	카드수수료율					
		신용			체크		
		현행	개선	(격차)	현행	개선	(격차)
우대가맹점	57.5			-			
영세	44.6	2.1%	0.8%	1.3%p ↓	1.6%	0.5%	1.1%p ↓
중소	13.0			-			-
3~5억	4.8	2.1%	1.3%	0.8%p ↓	1.6%	1.0%	0.6%p ↓
5~10억	4.5	2.1%	1.4%	0.7%p ↓	1.6%	1.1%	0.5%p ↓
10~30억	3.6	2.1%	1.6%	0.5%p ↓	1.6%	1.3%	0.3%p ↓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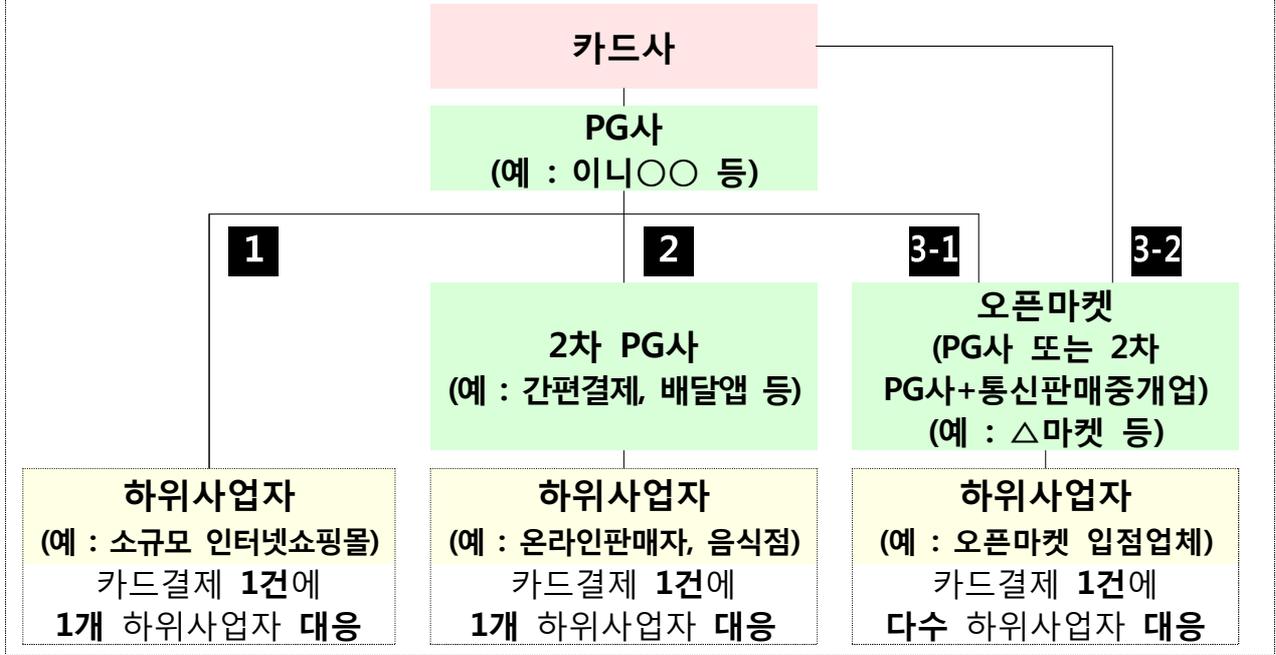
□ (적용대상) '전자상거래'의 방법으로 거래하며 카드사와 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한 PG사를 통해 카드 결제하는 영세·중소사업자

○ 다만, 국세청을 통한 매출액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PG사로 등록하지 않은 온라인쇼핑몰 등의 하위사업자는 적용대상이 아님

□ (적용시기) '19.1.31일 결제분부터 적용하되, 온라인 카드거래 구조에 따라 정산 방식 및 정산 시기는 상이할 수 있음

- ▶ 1차 PG를 통한 거래로서 전자상거래 방법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정된 거래의 경우 1.31일 결제분부터 실시간 적용(1)
- ▶ 2차 이상 PG 및 오픈마켓을 통한 거래의 경우 차액 정산을 위한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3월경부터 1.31일자 이후분 수수료 차액이 순차적으로 환급되며 4월 이후부터는 1일 단위 차액정산 정상화 예정(2, ,)

【참고 : 온라인 카드거래 구조도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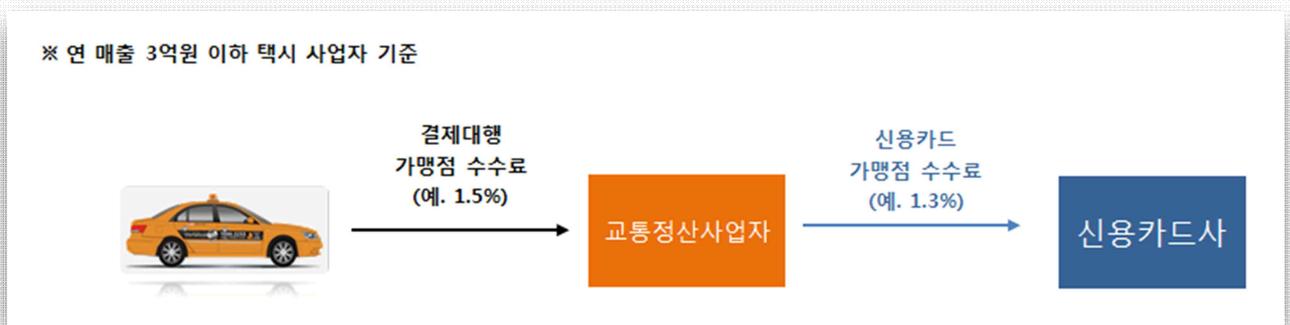
2. 개인택시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

□ (현황) 교통정산사업자*가 카드사와 대표가맹점 계약을 체결**하고, 개인택시사업자는 대부분 교통정산사업자의 하위사업자가 되는 구조

* 한국스마트카드, 이비카드, 마이비, 스마트로, DGB유페이, 한페이시스 등

** 개인택시사업자는 카드사와 직접 가맹계약시 대부분 우대수수료를 적용대상임에도 결제시스템 구축 부담 등의 이유로 대부분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

【개인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구조 (예시)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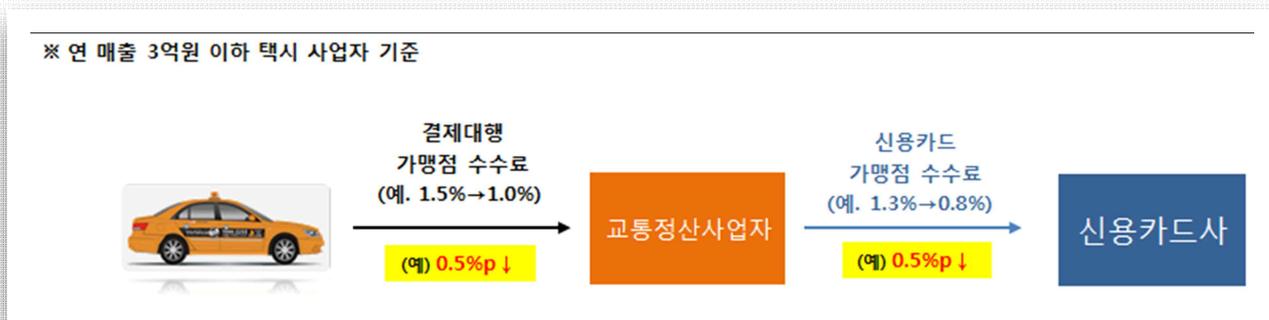
⇒ 대표가맹점인 교통정산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카드수수료가 산정*되어 개인택시사업자는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

* 카드사는 대중교통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일반가맹점 보다 낮은 수준의 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하며, 교통정산사업자는 개별 택시에 카드수수료를 포함한 결제대행수수료를 부과

□ **(개선방안)** 교통정산사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책정시 개별 개인 택시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대수수료를 적용

- 교통정산사업자는 카드수수료 인하분만큼 택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결제대행수수료를 인하

【 개인택시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조 (예시) 】



□ **(기대효과)** 대다수 개인택시사업자가 영세사업자(연매출액 3억원 이하)에 해당하여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

- 전국 약 16만개 개인택시사업자(전체의 94%)의 카드수수료율이 약 0.2%p~0.8%p(평균 0.5%p) 하락하여,

- 연간 약 150억원(1인당 10만원 내외) 상당의 카드수수료 경감 예상

* 연간 개인택시 카드결제액 약 3조원, 수수료율 인하폭 50bp 가정시

□ **(적용시기)** '19.1.31일 카드결제분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

※ 한국스마트카드 및 DGB유페이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구분을 위한 추가 전산 시스템 개발 필요

→ 1.31일 이후 체크카드 결제분에 대해 일단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(영세 기준 0.8%) 적용. 이후 2월 중 전산개발 완료시 추가 수취 수수료(0.3%=0.8%(신용 영세)-0.5%(체크 영세)) 환급 예정

☎ (문의) 한국스마트카드 1644-1188, DGB유페이 080-427-2342

3.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를 적용시 차액 환급

□ (현황) 신규가맹점의 경우 직전기간의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(약 2.2% 수준)을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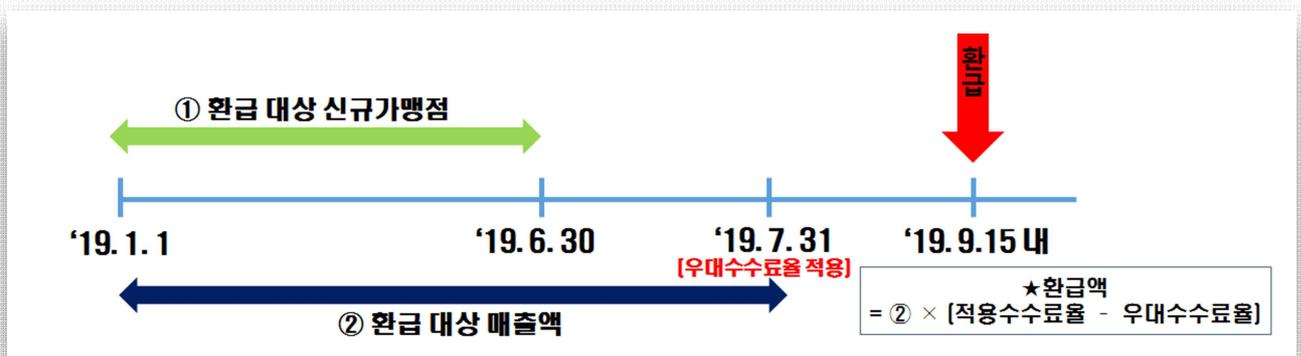
⇒ 신규가맹점의 경우 대부분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신규 영업시점부터 약 1~6개월간 높은 카드수수료 부담

□ (개선방안) 신규가맹점이 과세자료 등을 통해 파악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·중소가맹점으로 선정(1월말/7월말)될 경우,

○ 직전기간 카드매출액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既납부한 수수료와의 차액을 우대수수료율 적용일부터 45일 이내 환급*

* (예) '19.1월 신규가맹점(수수료율 2.2% 적용시) → '19.7월말 영세·중소로 선정 → '19.1~7월말까지의 카드결제에 대한 수수료 차액(1.4% = 2.2% - 0.8%) 환급

【'19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의 환급 예시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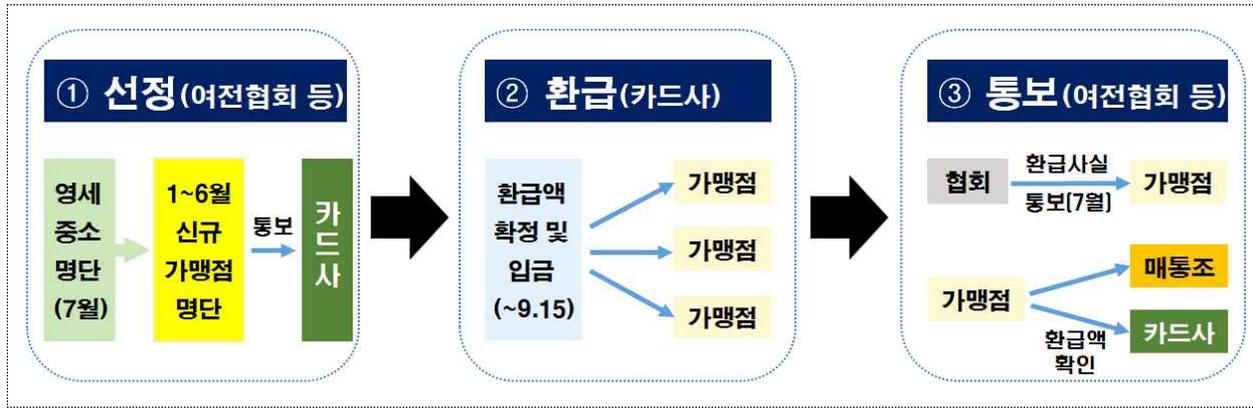
□ (기대효과) '18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의 이동현황을 기준으로 추정시

○ 18만개의 신규가맹점이 영세가맹점 수수료율(0.8%)을, 2.8만개가 중소가맹점 수수료율(1.3%~1.6%)을 소급적용 받게 되어,

○ 총 20.8만개(신규가맹점의 약 98%, 전체가맹점의 약 8%)가 환급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

□ (적용대상) '19.1.1일 이후 신규가맹점

['19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하반기 환급 과정]



4. 가맹점수수료 산정시 반영되는 적격비용의 기준 명확화

- 「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」 마련시 논의된 적격비용 산정방식 개선내용을 포함하여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비용의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예시*

* 신용카드업자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적립하는 대손준비금, 접대비 등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명백히 불합리한 비용 등

3 향후 계획

- 금감원을 통해 PG, 교통정산사업자의 우대수수료를 적용 실태 ('19.상반기 중)와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('19.하반기 중) 등을 점검할 예정
- 아울러, 일반가맹점의 경우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편 등에 따른 카드수수료를 역진성 개선 효과 등을 지속 점검·모니터링할 예정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 prfsc@korea.kr

넓게 들었습니다
 바르게 알리겠습니다